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111호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신성장 동력사업인 뷰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뷰티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뷰티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1. 뷰티사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

2. 이·미용 기자재박람회 등 홍보활동
 3.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
 4. 뷰티사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다.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뷰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사업과 관련된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마. 뷰티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kjun092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성장 동력사업인 뷰티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뷰티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사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뷰티사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
2. 이·미용 기자재박람회 등 홍보활동
3.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
4. 뷰티사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뷰티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뷰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사업과 관련된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뷰티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화장품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117호, 2015.1.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化妆품을 말한다.
 -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4.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분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9.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